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6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 조은희·강대식·신성범

곽규택 • 이성권 • 김용태

박정하 · 성일종 · 최수진
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은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,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

-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재난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75조의2).
- 나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 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(안 제75조의4).
- 다.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,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75조의5).
- 라.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75조의6).
- 마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(안 제75조의7).
- 바.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·군·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,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(안제75조의9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를 각각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2까지로 하고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75조의2(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재난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 방재단 구성원의 재난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 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자율방재단의 구성・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- 제75조의3(자율방재단의 임무) ①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자율방재단의 인적 ·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
 - 나.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 활동 등 재난의 예방 및 대비 활동
 - 다. 재난관리 관련 교육・훈련 지원
 - 라.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활동 지원
 - 마. 전염병 예방ㆍ방역 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지원
 - 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75조의4(자율방재단의 소집 등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자율방재단원은 관할 거주지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이

- 경우 자율방재단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다.
- 제75조의5(행위의 금지)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
 - 나. 영리를 목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
 - 다.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 - 라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 - 마. 그 밖에 자율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- 제75조의6(교육 및 훈련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원의 교육·훈련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의7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

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의8(자율방재단의 평가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자율방재단 및 시·군·구에 대하여 포 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5조의9(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)
 - 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·군·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·도자율방 재단연합회(이하 "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 고,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 국자율방재단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

하여 지도 및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78조제3항 중 "제75조의3제1항"을 "제75조의11제1항"으로 한다. 제78조의2제2항 중 "제75조의3제1항"을 "제75조의11제1항"으로 한다. 제79조제6호의2 중 "제75조의3제7항"을 "제75조의11제7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제75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 자율방재단중앙회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「자연재해대책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삭제한다.

제75조제1항 전단 중 "제48조, 제66조"를 "제48조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	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
기본법 일부개정법률	기본법 일부개정법률
<u><신 설></u>	제75조의2(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
	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역
	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
	<u>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</u>
	사단체, 재난 관련 업체, 전문
	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
	•운영할 수 있다.
	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을
	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
	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・군수
	• 구청장은 자율방재단 구성원
	의 재난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
	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
	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
	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	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자율
	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 예방
	<u>•대응•복구 활동 등에 참여</u>
	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
	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

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 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.

④ 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의3(자율방재단의 임무) ①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가. 자율방재단의 인적・물적

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

 나.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

 는 지역의 예찰 활동 등

 재난의 예방 및 대비 활동

 다. 재난관리 관련 교육・훈

 런 지원

<u>라.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</u> <u>구 활동 지원</u>

마. 전염병 예방・방역 활동등 공중보건 관리 지원

<u>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</u> 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이

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시·도지사나 시장 ·군수·구청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75조의4(자율방재단의 소집 등)
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
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.
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 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.

② 자율방재단원은 관할 거주 지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율방재단원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에게 그 사

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조 례로 정한다.

제75조의5(행위의 금지) 자율방재 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.

가.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나. 영리를 목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는행위

다.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
 라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

 하는 행위

<신 설>

<신 설>

<u>마. 그 밖에 자율방재단의 명</u> 예가 훼손되는 행위

제75조의6(교육 및 훈련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율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원의 교육·훈련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의7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자율방재단 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재난장 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75조의8(자율방재단의 평가 등)
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
지사는 자율방재단의 원활한
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u>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</u>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 우 수한 자율방재단 및 시·군· 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5조의9(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) ① 자율방재단 상호 간 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·군·구 자율방재단으로 구 성된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 (이하 "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 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고, 시·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 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고, 시·도자율방재 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제75조의2(안전책임관) (생 략)

제75조의3(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) (생 략)

제75조의4(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) (생 략)

- 제7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제7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 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 부,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 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, 제73조 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· 사용,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 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

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 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 리・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75조의10(안전책임관) (현행 제 75조의2와 같음)

제75조의11(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증 교부 등) (현행 제75조의3과 같음)

제75조의12(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) (현행 제75조의4와 같 음)

· ② (현행과 같음)

(3)
- <u>제75</u> 조의11제1항

정	하는	바에	따라	전문기관	등
에	위탁	'할 수	- 있다	·.	

④ (생략)

- 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) ① (생 략)
 -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 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·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 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 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6. (생략)
 - 6의2. <u>제75조의3제7항</u>을 위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 를 알선한 자
 - 7. (생략)
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78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
원 의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제</u>
<u>75조의11제1항</u>
제79조(벌칙)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<u>제75조의11제7항</u>
7. (현행과 같음)